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85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김병주·유용원·어기구
박용갑·허성무·김태선
김성희·이언주·황명선
김소희·이달희·강준현
김상훈·민병덕·김예지
김태호·김의겸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 전용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은 기기의 구매·설치에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은 그 지원범위를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 신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구매 또는 설치”를 “구매·설치 등 생산설비 확충”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조세의 감면)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방 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 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 ----- ----- ----- ----- ----- -----.
1.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u>구매</u> <u>또는 설치</u>	1. ----- <u>구매 ·</u> <u>설치 등 생산설비 확충</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3조의2(조세의 감면) 정부는</u> <u>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u> <u>요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u> <u>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u> <u>세를 감면할 수 있다.</u>